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. 8. 13 선고 2019가단4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7. 19

판결 선고 2019. 8. 1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대 236㎡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피고는 원고 소유인 충북 옥천군 C 대 23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점유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2001. 8. 16. 접수 제89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원운재

별지